

#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822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1999. 10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의 관련법령과의 상치조항 및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조문내용을 보완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영·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기금의 운영관리를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하였고(안 제4조)
- 나.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(안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)
- 다.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·출납·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·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(안 제12조제1항)
- 라.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. (안 제13조제2항)

## □ 개정조례(안) : 별첨

□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□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 발췌서 (별첨)

- 지방재정법 제64조, 제1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, 제156조
- 지방자치법 제35조

○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○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○ 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
○ 기타참고사항 : 기금표준조례 안 (별첨)

##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.

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중 “위원장 및 부위원장”을 “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”으로 한다.

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 각호외의 부분중 “심의의결한다”를 “심의한다”로 한다.

제7조중 “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”를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”로 한다.

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 (관계규정의 준용등)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·출납·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·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한다.

제13조 (기금결산)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서류
  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
  3. 현금 및 세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-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 (기금의 운영관리) ① <u>기금운영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다.</u>  <u>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계좌(안산시노인복지기금계좌설치)에 납입·관리한다.</u>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제5조 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 <u>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</u>  <u>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함께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③~⑤ (생략)</p> <p>제6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<u>심의 의결 한다.</u>      1.~ 2. (생략)</p> <p>제7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(생략)  <u>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	<p>제4조 (기금의 운용관리) ① <u>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 삭 제 &gt;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 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 <u>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u>  <u>②-----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-----.</u></p> <p>③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 (위원회의 기능) -----  <u>-----</u>  <u>심의한다.</u>      1.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  <u>②-----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-----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 (기금의 운용계획)      ①~② (생략)  <u>&lt; 신설 &gt;</u></p>	<p>제10조 (기금의 운용계획)      ①~② (현행과 같음)  <u>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11조 (회계공무원) ① (생략)      1. (생략)      2. <u>분임운용관 : 사회여성과장</u>      3. (생략)</p>	<p>제11조 (회계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1. (현행과 같음)  <u>&lt; 삭제 &gt;</u>     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 (회계관리)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안산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.</p>	<p>제12조 (관계규정의 준용등)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·지출·출납·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·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  <u>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</u></p>
<p>제13조 (결산 및 보고) 기금운용관은 매회계 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</p>	<p>제13조 (기금결산)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 <u>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u>      1. <u>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</u>      2. <u>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</u>      3. <u>현금 및 세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</u>  <u>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